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17-2호

「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 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7년 4월 4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향토방위와 국방의 의무를 위해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화장료를 감면하여 명예심 고취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증진

2. 주요 개정내용

승천원 사용료 감면 대상에 ‘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’을 추가(안 제7조 제1항제3호)

※관내 군부대 복무 중 사망한 경우 및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의회장 [참조 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,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(전화 : 054-537-7841, FAX : 054-535-9854,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www.sangju.go.kr)

sangjuCouncil.go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
주소 및 전화번호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

- 성명(단체명) :
- (단체의 경우 단체명, 대표자)
- 주 소 :
-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의견 내용	비고